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▷ 본 조례안은 98년 8월 8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광주광역시 서구 여비조례 준용법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 (대통령령 제15680호, 1998. 2. 24)으로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.

■ 주요골자

-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조례의 준용법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준용법령의 조항과 명칭으로 개정
- 자치단체장(구청장)의 여비지급기준 신설 (안 제3조)

■ 관련근거

- 공무원여비규정
-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 표준안 (광주광역시 총무12500-583)
(98. 5.13)

■ 검토의견

-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→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조례로 개칭하고,
-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조례 준용법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구분 없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하고 제3조를 신설 여비의 지급구분에 구청장의 여비기준을 신설하였으며,

○ 제3조 국내여비의 준용을,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며, 동조 제1, 2, 3, 4항을 자구수정하고 제5, 6, 7항을 신설하였으며,

○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삭제 일원화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